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백선희 · 정춘생 · 이해민  
황명선 · 황운하 · 박희승  
손명수 · 정준호 · 조정식  
신장식 · 서왕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

설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제8조의2에 따른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방부의 실장 및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 · 국방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군인이 아닌 후보자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

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 ② (생략)</p> <p>③ 총장은 <u>장성급(將星級)</u>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 ⑤ (생략)</p> <p><u>&lt;신 설&gt;</u></p>	<p>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8조의2에 따른</u> <u>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u> <u>후보자-----</u>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u> <u>국방부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u> <u>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방부</u> <u>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u> <u>“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추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u> <u>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u>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u> <u>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방</u> <u>부의 실장 및 국장급 공무원인</u></p>

정부위원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군인이 아닌 후보자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